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경감 사항 추가(안 제5조제2항제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9. 21 ~ 2016. 10. 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주차장조례”를 “성주군 주차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제5조제1항제3호 중 “차량,”을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표1]”을 “별표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경자동차《개정 2012. 4. 20》”를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6조 중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를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로 한다.

제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유로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기주차권 및 회수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준"을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8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를 "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8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영 제6조 제1항"을 "영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철거할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1"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물 허가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 주차장조례	성주군 주차장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생 략)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현행과 같음)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2. 4. 20》	①---------- 별표 1----------.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 감면) (생 략)	제5조(주차요금 감면) (현행과 같음)

①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3. ---------- 차량 ----------.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상이 1급 내지 6급)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증명서 제시)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②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별표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개정 2012. 4. 20》	2.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3.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신설 2012. 4. 20》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6조(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주차장의 표시) <신 설>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삭 제>
②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지 제1호 서식----------.
③주차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각 호----------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위치와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생 략)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현행과 같음)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5.4.23>	②---------- 별표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생 략)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현행과 같음)
⑤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로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유료주차장----------.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생 략)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현행과 같음)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정기주차권 및 회수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정기주차권 및 회수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③----------. ---------- ---------- ---------- ---------- 각 호의 기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생 략)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현행과 같음)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별표 2----------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주차장의 심의 등)	제14조(주차장의 심의 등)
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8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8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생 략)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②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400㎡당 1대로 한다.<개정 2015. 4.23>	②---------- 영 제6조제1항----------. ---------- ----------.

<신 설>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철거할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생 략)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현행과 같음)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별표1]의 주차요금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주차권 요금(주.야간)으로 하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별표1----------. ----------.
제19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생 략)	제19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되는 대수(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각 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④---------- 별지 제6호 서식----------

"사람중심! 경북세상!"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법령 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2278(2016.5.16.)호 이첩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이상 감면하도록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을 2016.1.19일자로 일부개정(법률 제13804호, 시행 : 2016.7.20.)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차요금의 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 계획을 2016.5.27.(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을 2016.4.12일자로 신설(국토교통부령 제302호, 시행 : 2016.4.12.)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차장법령 개정내용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수신자 시장·군수(교통행정부서장)

주무관	차량관리 담당	민생경제 교통과장	전결 2016. 5. 17.
협 조 자			
시 행	민생경제교통과-11583 (2016. 5. 17.)	접 수	경제교통과-43130 (2016. 5. 18.)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665 팩스번호 054-880-2669 / autoroc@korea.kr / 대국민 공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